

창원지방법원 2023. 5. 12 선고 2022나58442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전 문

원고, 항소인 A

피고, 피항소인 1. B

2. C

변 론 종 결 2023. 3. 31.

판 결 선 고 2023. 5. 12.

제1 심판결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2. 6. 8. 선고 2022가소258 판결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2면 4행의 ”차용하였는데“ 다음에 ”(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를, 제2면 5행의 ”하였는데,“ 다음에 ”(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를 각 추가하고, 피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하거나 강조하는 주장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추가하여 판단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법원에서 추가 판단하는 부분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대여금을 소송경비로 사용한 소송에서 패소하였음에도, 피고들의 기망 또는 강요로 인하여 그 대여금의 원금을 초과하여 합계 5,380만 원을 변제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 초과 변제받은 금액 중 2,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갑 제2, 10호증의 각 기재, 당심 증인 D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들이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을 대여하면서 이 사건 약정을 하였다거나 피고들의 기망 또는 강요로 그 대여금을 초과 변제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 원고가 이 법원에 제출한 D의 진술서(갑 제10호증)에는 ‘원고가 피고들로부터 이 사건 대여금을 빌리는 자리에 동석하였는데, 그 당시 피고들이 원고가 주식회사 E의 주식을 반환받는 소송에서 패소할 경우에 위 대여금 2,000만 원을 받지 않겠다고 하는 것 등을 직접 들었다’라는 취지로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내용이 기재되기는 하다.

2) 그런데 증인 D은 당심에서 ‘진술서(갑 제10호증)는 그 내용을 정확하게 읽지 않은 채 원고가 가져온 서류에 인장만을 날인한 것이다. 원고가 피고들로부터 소송경비 명목으로 이 사건 대여금을 빌렸다는 사실만 알고 있을 뿐, 그 대여금의 변제 조건에 관하여는 알지 못한다. 이 사건 약정이

있었다는 것은 원고로부터 전해 들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위와 같은 증인 D의 증언에 갑 제10호증(진술서)의 내용은 원고가 작성한 것¹⁾이라는 점을 더하여 볼 때, 갑 제10호증(진술서)은 형식적 증거력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내용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3) 원고는, 증인 D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 사건 약정 당시의 상황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한 채 증언한 것이어서 그 증언만으로 갑 제10호증(진술서)의 신빙성을 부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증인 D은 증언 과정에서 이 사건 대여금과 관련하여 자신이 경험한 상황을 구체적으로 기억하였을 뿐 아니라 달리 기억력의 한계를 호소하지도 않았다. 또한 증인 D이 원고와 친밀한 관계에 있어 원고에게 불리한 증언을 할 동기나 이유도 찾아볼 수 없으므로, 위와 같은 원고의 주장만을 들어 증인 D의 증언을 쉽사리 배척하기는 어렵다.

4) 한편, 원고는 피고들의 기망 또는 강요로 인하여 이 사건 대여금의 원금보다 많은 금액을 변제한 것이라고 주장한다.²⁾ 부당이득의 경우에 법률상 원인이 없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부당이득반환을 주장하는 사람에게 있는데, 이 사건의 경우 원고가 피고들의 기망 또는 강요로 위 대여금을 초과 변제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김구년, 판사 정수미, 판사 강 웅

1) 원고는 당심 제2회 변론기일에 “원고가 D에게 진술서를 2번 보냈고, D이 내용을 확인한 후 갑 제10호증(진술서)를 작성한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

2) 원고는 이 사건 소장(4쪽)에서 “피고들이 원고를 기망하여 편취한 금액에 대해서 피고들이 금융업허가증(대부업) 없이 오랜 세월 돈 장사한 이자소득을 세법시효 10년 동안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법원에 소장 제출하오니 판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기재하였는데, 이러한

원고의 주장을 위와 같이 선택한다.